

영등포구의회  
제21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
민간위탁 동의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9. 9. 27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
민간위탁 동의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147호로 2019년 9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노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노동전문 민간기관(노동단체)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대상사무

-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사무

사 업 명	주요 사업내용
①노동법률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당노동행위, 단체협약, 산업재해 등</li> <li>○ 임금체불방지 및 피해노동자 상담·구제 지원</li> <li>○ 노동조합설립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</li> </ul>
②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민대상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 교육</li> <li>○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, 직업지도</li> <li>○ 취업알선,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</li> </ul>
③노동자 문화·복지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등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</li> </ul>
④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 노동인권센터장과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간 협의체 구성·운영</li> </ul>
⑤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경제,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등 실태조사</li> </ul>
⑥시설관리·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설 관리·운영</li> </ul>

#### 나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
- 위탁사무내용
  -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
  -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
  -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
  -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
 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모집방법: 공개모집

## 4. 검토의견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례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,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게 민간위탁하여,
- 노동법률·교육 및 취업지원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**이에 대한 노하우를**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, 사업능력, 재정능력,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,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2

#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8조(관리·운영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센터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9조(지도·감독)**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센터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<개정 2013.12.12>

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.

〈개정 2013.12.12〉

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